

대한민국족구협회 정규직 공개채용

대한민국 족구 종목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한 유능한 인재를 공개 채용합니다. 열정 가득한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합니다.

1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부서	주요업무
사원	사무행정 / 홍보	1명	사무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 및 마케팅 (각종 대회 및 행사 촬영 및 편집, Youtube 실시간 중계 및 관리)○ 홍보물 제작 및 SNS 관리○ 기타 행정 업무 등

2 근무형태 및 조건

채용분야	근무신분	근무시간	근무지	월 보수
사무행정 / 홍보	정규직	상시근무자, 주 5일(월~금), 1일 8시간 (09:00~18:00)	올림픽회관 신관 21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24)	협회 내규에 따름

* 업무특성상 대회 및 행사 등으로 주말근무, 국내외 출장이 가능한 자

3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구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사학위 이상 학력 소지자○ 고등학교 이상 학력 소지하고 체육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컴퓨터활용능력 및 문서작성 가능자○ 업무특성상 대회 및 행사 등으로 주말근무, 국내외 출장이 가능한 자○ 기획컨텐츠/유튜브 촬영 및 편집 가능자
	우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 행정업무 유경험자○ 체육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SNS를 활용한 홍보 및 마케팅 유경험자○ 컴퓨터활용능력 및 문서능력 관련 자격증 보유자

4 전형절차



가. 채용일정 * 일정은 사무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구분	추진일정
서류전형 (원서접수)	2025. 4. 15.(화) ~ 2025. 4. 29.(화) 15시까지 [합격자발표: 2025 4. 30.(수) 예정]
면접전형	2025. 5. 8.(목) [합격자발표: 2025. 5. 8.(목)]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수습임용	2025. 5. 12.(월) ~ 2025. 8. 12.(화)
정식임용	2025. 8. 13.(수)

나. 전형별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합격배수
----	------	------

① 공통(유의사항)

-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내용으로만 작성
- 면접 시, 지원서에 작성한 자격 및 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접 당일 서류 누락 또는 미 제출 시 응시 제한될 수 있음.
-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므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개인 인적 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성별, 주소 등) 관련 내용 일체 기재 금지하며 관련 내용을 명시할 경우 전형단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명, 주소, 연락처는 서류/면접전형시 블라인드 처리예정

구분	주요내용	비고
----	------	----

② 전형별 평가방법

서류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력서(입사지원서) 1부(별도 첨부양식) • 자기소개서 1부(별도 첨부양식) •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별도 첨부양식) • 임용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부존배 확인 서약서 1부(별도 첨부양식) •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자) • 관련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 개인 포트폴리오(영상촬영 및 편집 등) 제출(양식은 자유) <p>** 미 제출 시, 원서접수 불가/ zip파일로 압축하여 제출</p>	
면접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장소) 2025. 5. 8.(목) • * 정확한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통지 • (평가기준) 자기표현력, 리더십역량, 직무역량, 태도역량, 인간관계, 기타질문 • (평가방법) 면접위원별 6개 항목 평가 	
최종합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발기준) 합격평균 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선발 - 최종합격 적합자(평균 60점 이상)가 없을 경우 재공고 - 동점자 발생 시, 평가항목 고득점자순(직무역량 → 리더십역량 → 자기표현력 → 태도역량 → 인간관계 → 자유질문)으로 결정함 • (최종확정) 지원 자격 검증 후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확정 	
예비합격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순위 1~2위를 예비 합격자로 하고, 최종합격자 중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순위대로 임용 - 최종 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간 	

5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제출시기	제출서류	제출방법	용도
① 공통(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서접수는 우편 또는 방문접수 불가(이메일(jokgu@sports.or.kr) 발송) 수신시간 이후 추가 접수 절대불가(송신시간 기준이 아니므로, 제출에 문제 없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제출 요망) 입사지원서에 기입한 사항은 증빙서류 모두 제출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② 제출서류 및 방법			
원서접수 [4.15.(화) ~ 4.29.(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력서(별첨 양식참조) ※ 메일 및 입사지원서 제목 - 대한민국족구협회 지원_이름 자기소개서(별첨 양식참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첨 양식참조) 임용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부존재 확인 서약서(별첨 양식참조)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자)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관련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메일 제출 - jokgu@sports.or.kr 	입사지원
면접당일 [5.8.(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국가발행 신분증만 인정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남자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본제시 사본제출 	입사지원 확인용 결격사유 확인용
합격자 발표 후	해당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용신체검사서 * 단, 신체검사 결과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본제출 	

6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채용이 취소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채용 관련 규정 위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최종 입사지원서 제출 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력의 계산, 자격증, 교육사항 등은 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전형일시 등 구체적인 일정은 대한민국족구협회 홈페이지(www.jokgu.or.kr)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7 문의 및 연락처: 김희정 대리(☎ (02)2202-5526(내선4))

2025. 4. 15. (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